

뉴테러리즘의 민간시큐리티 연계와 발전방안*

A Study Related on Relationship between New Terrorism's and Security Strategy for Korea

강민완**

<목 차>

I. 서론	IV. 민간 시큐리티 상호연계 방안
II. 뉴테러리즘의 개념 및 특징	V. 결론
III. 우리나라의 대테러 현황 및 대응책	

<요 약>

민간안전분야의 상호연계성과 발전방안으로서는 첫째, 대테러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둘째, 대테러 전문가 자격증 제도를 도입시켜야 한다. 셋째, 민영화 된 대테러 연구소가 필요하다. 넷째, 대테러 방지법 제정을 위한 민영화의 역할의 중요성이다.

또한 민간 시큐리티와의 협력에서 민간안전 산업의 전문화, 세분화를 위해서라도 대학이나 민간안전관련 학회 및 협회에서 연구소를 설치해야 한다. 다양한 대테러 전문가를 양성하고 안전분야 관련 종사자들의 의식전환과 대테러 교육 기자재 및 교육내용을 구축해서 특정단체 권한이 아니고 인권침해 최소화 할 수 있는 다각적 검토 연구가 후속연구를 계속해서 연구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테러학의 학문적영역의 구축이 필요하다. 테러학의 학문적 범위 연구가 설정되어서 대테러 전문가 양성이 체계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국가기관의 주도형으로 반전하기보다는 민간주도형으로 과감하게 학계와 적극적인 상호협력 방안에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 국제화 등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 후속적인 연구에서는 범죄와 전쟁과 테러의 상호관련에 관한 학문적 연구를 심층 깊은 분야별 연구가 되어져야 한다.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안전분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따른 대테러의 대응책의 역할에서의 보안, 경호, 경비의 분야의 상호협력 방안도 요인별로 과학적 접근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뉴테러리즘, 민간경비, 전략, 대테러, 대테러 전문가

* 2007학년도 경기대학교 학술연구비(일반연구과제)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경기대학교 경호안전학과 교수

I. 서론

테러는 21세기 새로운 국가안보 위협요인으로 급격히 떠오르고 있다.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의 심장부를 강타한 9.11 테러는 인류문명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미증유의 비인도적 공격이었다. 이 한 번의 공격으로 3천명에 가까운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되었으며 세계질서는 탈-냉전(Post post-Cold War)시대에 돌입하게 되었다. 21세기의 테러는 그 대상과 범위,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21세기의 테러를 ‘뉴테러리즘(New Terrorism)’이라 부르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¹⁾

세계사적으로 테러리즘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 9.11 테러 이후, 국제사회는 테러에 대항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²⁾ 각 국가들은 테러와 관련된 12개에 달하는 국제규범³⁾에 서둘러 가입하고 있으며, 각종 국제회의를 통하여 대테러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제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또한 개별 국가들은 대테러 관련 국내법을 정비하고, 감시기관을 강화하며, 전담 부서를 편성하였으며, 대테러 특수부대를 조직하고, 예산을 증액하는 등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테러가 우리의 일상에서 이미 통상적인 현상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⁴⁾는 것을 반증해 줌과 동시에 모든 국가들이 대테러리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테러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데다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이 막대하므로 최선의 대책은 사전예방이라 할 수 있다.⁵⁾

또한, 국가정보원이나 경찰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테러방지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적 동향

1) 세종 정책토론회 보고서, [테러와 한국의 국가안보]-테러발생시 파급영향과 우리의 대응방향-, 세종연구소, 2004.

2) U.S. Department of State, National Strategy for Combating Terrorism(Washington:DoS, September 2006), p19.

3) 이 조약들은 다음과 같다. “탑승객에 대한 공격과 특정한 행위에 관한 동경조약(1963)”, “항공기의 불법적 납치에 관한 헤이그 조약(1970)”, “항공기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 억제에 대한 몬트레이 조약(1971)”, “사람에 대한 범죄의 형태를 취하는 테러 행위와 국제적 중요성을 지니는 강탈행위에 대한 예방과 처벌에 관한 조약(1971)”, “국제적 보호 인물에 대한 범죄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조약(1973)”, “인질 행위에 관한 협정(1979)”, “핵 물질로부터 신체적 보호를 위한 조약(1979)”, “국제 항공에서의 폭력의 불법적 행위 금지에 관한 의정서(1988)”, “여객선에서의 폭력의 불법적 행위 금지에 관한 협정(1988)”, “발각되지 않는 플라스틱 폭발물에 관한 협정”, “폭발물 금지에 관한 국제 협정(1997)”, 그리고 “테러 자금조달 억제에 관한 협정(2002)”

4) Cindy C. Combs. Terrorism in the 21st Century(New Jersey : Prentice Hall, Inc., 1997), p.220.

5) 국가정보원, 테러로부터 안전한 해외생활

을 볼 때, 테러는 국가기관의 안전과 안보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방향을 전환하는 모색도 시기적으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업체, 다중이용시설(공항, 지하철, 백화점, 극장, 연구소 등)의 국민안전의 시설도 국가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전환 및 상호협력이 각론적으로 서로 연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한국민간 시큐리티 관련 업체만 약 2,600개 이상, 시큐리티 종사자(특수경비원, 민간경비원) 약 12만 명 이상이다. 경비원들에 대한 테러의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테러교재나 교육내용, 시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왜냐하면 경비원들이 국민에 안전에서 가장 밀접하게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 시큐리티 협력방안에서 특히 민간시큐리티 분야 업체의 역할이 제시되고 그에 따른 국가기관의 역할을 민영화하여 좀 더 체계적인 접근과 발전방안을 위하여 본 연구자는 연구하고자 한다.

II. 뉴테러리즘의 개념 및 특징

뉴테러리즘은 테러조직간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강조한다.⁶⁾ 랜드연구소에 따르면 뉴테러리즘은 비정규의 전쟁 양상을 띠지만 얼굴은 드러내지 않으며, 특히 전선이 없이 전세계를 무대로 한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국가정보원도 뉴테러리즘의 특징으로 ①요구조건·공격주체 불명으로 추적 곤란, ②전쟁수준의 무차별 공격으로 피해가 상상을 초월, ③그물망 조직으로 무력화 곤란, ④테러의 긴박성으로 대처시간 부족, ⑤테러 장비가 따로 없어 방어 부족, ⑥대량 살상무기 사용으로 새로운 대처방식 필요, ⑦언론매체의 발달로 공포의 확산이 용이, ⑧사건 대형화로 정치적 부담 증대, ⑨중산층·인텔리를 충원, 테러의 지능화 등을 들고 있다.⁷⁾

특히 9·11테러리즘 사태 이후에 이러한 뉴테러리즘에 대한 특징에 대한 규명은 더욱 선명해졌다고 할 수 있다. 뉴테러리즘은 요구조건이나 공격주체의 불분명으로 추적이 곤란하다. 즉 테러리즘 집단 자신과 비보호세력을 보호하고 공포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요구조건 제시도 없고 정체도 밝히지 않아 색출·근절이 곤란하다. 또한 무차별적인 인명살상으로 상대방에게 최대한의 타격을 가하려는 전쟁의 한 형태로 자행되어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며 여러 국가·지역에 걸쳐 그물망 조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중심을 제거해도 다른 중심이 그 역할을 대신해주기 때문에 조직의 무력화가 어려운 실정이다.⁸⁾

6) (http://www.rand.org/pubs/monograph_reports/MR989/MR989.chap3.pdf)

7) 국가정보원, “뉴테러리즘의 특징과 국제사회 대응동향,” 자료실-대테러상식-8번, <http://www.tiic.go.kr/참조>

국가정보원이 분석한 뉴 테러리즘의 특징 내용을 과거의 테러리즘과 비교하여 도표화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뉴 테러리즘의 특성, 과거와의 비교분석

구분	특성	
	뉴 테러리즘	과거의 테러리즘
1. 요구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조건이나 공격주체가 불명확(또는 없음) • 추적이 어려움 • 얼굴 없는 테러리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막연한 서구 / 미국에 대한 반감 - 종교적 이질감 / 문화 저항 * 색출이 어렵고 공포감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설명을 통해 주취를 밝힘 - 탈식민주의 및 민족해방 - 반자본주의
2. 공격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적 대량살상 무기나 장비(항공기 등)에 의한 전쟁수준의 피해요구 • 무차별적 대량살상 목표에 대한 피해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기 납치 후 2차목표 타격 - 중요기관, 대량살상 가능, 목표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징성을 가진 선전효과를 노린 대상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인암살, 인질 납치 - 항공기, 주요시설, 기관
3. 집단 및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으로 세계 각지를 Net-Work로 연결한 조직망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화시대의 Net Work • 여러 국가에 분산된 이념 결사체조직으로 인터넷 전자메일, 채팅룸을 이용한 Net-Work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의 파악, 무력화가 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한 거점에 지도자에 의한 피라미드식의 조직체 운영 • 무력에 의한 소탕가능
4. 대응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많은 시간(수개월 또는 수년간)을 가지고 준비하나 테러리즘 행위의 돌발적, 긴박성으로 인한 대처시간 부족 • 돌발적인 공격과 공격자의 자살 등 대응 실체가 없거나 긴박성으로 처리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예방 외 방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격시간이나 공격 후 협상 등의 여유로 협상이나 현장소탕 가능
5. 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격수단의 다양성으로 방어와 예방책 마련이 곤란 • 항공기 납치 후 2차 추돌, GAS, 생화학 무기 등 다양성 및 예측불가능한 방법이 동원됨으로 방어와 색출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상무기(칼, 총), 폭발물 등의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대비와 훈련가능
6. 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량살상무기의 사용이 예상됨으로 새로운 차원의 대비책 필요(핵무기, 생화학, GAS 등) • 대량살상무기로 독GAS 세균(탄저균) 등 무차별적으로 사용되고 미사일, 핵무기 등의 사용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무기 및 재래식 무기에 의한 표적 공격
7. 언론 매체의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러리즘현장이 실시간 공개됨으로써 효과가 빠르고 위협의 확산됨 • 사건현장의 생중계가능 위협이 확산됨 • 수사의 어려움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이나 협상조건외의 제시 등으로 활용
8. 사건의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을 방불케 하는 대량피괴와 희생으로 확산 • 국가적 재난으로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적 부담, 경제적 파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된 진압, 협상팀 및 복구 요원에 의한 국지적인 해결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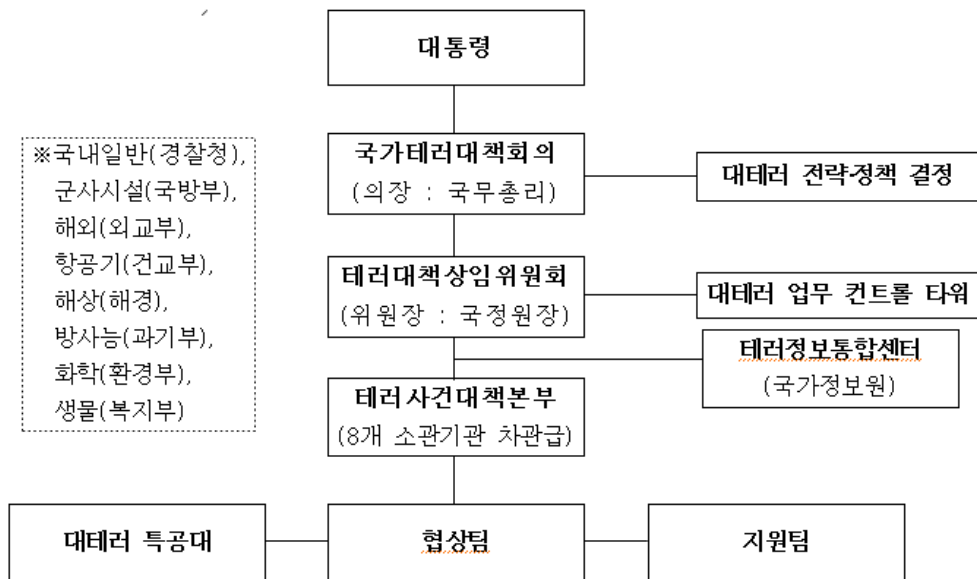
(출처 : 국가정보원, 테러정세, 2002)

8) 이호섭, “한국의 대테러대책 연구 : 국가안보정책 차원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p.59~60.

전 인류가 드라마가 아닌 테러리즘의 실제상황을 실시간의 매스컴에 의해 목도하면서 그 위협을 느낀 예는 아마 2001년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테러리즘”이 최초일 것이다. 뉴욕과 워싱턴에서 동시에 발생한 9. 11테러리즘은 뉴 테러리즘을 설명해주는 좋은 사례이다. 이를 요약하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동시다발적, 항공기를 이용한 자살공격, 대량살상 등 기존의 테러리즘에 대한 일반적 통념을 능가하는 가공할만한 사건이었다. 또한 공격자의 실체가 밝혀지지도 않았으며 구체적인 요구조건도 없다. 테러리즘의 양상은 그 시대적 정치 상황과 과학기술, 정보통신, 교통수단 등의 수준의 반영이다. 21세기 국제 정치·외교적 상황 하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의 테러리즘 기법이 동원되는 것은 당연하다.

III. 우리나라의 대테러 현황 및 대응책

<표 2> 우리나라 테러대응 업무수행 체계도



최상의 대테러 대책기구는 대통령 직속인 대테러대책위원회가 있다. 대테러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국정원장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대책, 협의, 결정의 역할을 한다. 현재 15개 부처가 각기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기관과의 여러 가지의 독자성을 갖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선진국의 나라들은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호주 등 16개국에서 개별법이 제정되는 등 반테러는 국제적 추세이다.⁹⁾

문제점 및 대응책으로는 첫째, 선진국과 같은 통합적인 대테러센터가 없는 것이다. 미국의 테러위협통합센터(TTIC), 영국은 합동 테러분석 센터(JTAC), 캐나다는 안전정보부 산하에 종합국가보안평가센터(INSAC), 호주는 보안정보부 산하 국가위협평가센터(NTAC), 싱가포르와 태국은 대테러센터와 국가정보조정센터를 각각 설립하고 있다. 그래서 대테러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¹⁰⁾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우리나라는 15개의 정부 부처에서 제각기 분야별 임무를 맡고 있다. 따라서 통합된 테러센터 설립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대테러법에 대한 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국민들과 상호협력 할 수 있는 대테러의 민영화에 따른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IV. 민간 시큐리티 상호연계 방안

9.11테러이후의 테러리즘의 양상은 최첨단화된 대량살상무기와 과학화된 테러기법이 종교, 문화, 정치적으로 사회적 이탈의 방향으로 다양화, 복잡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다. 그에 따른 국가기관이 할 수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다고 본 연구자는 사료된다. 그 이유로는 국가중요기관이 통제하지 않는 국제적 대기업 시설과 인적자원에 대한 테러의 대응시스템은 국가에서 경호경비를 해 주기에는 능력의 한계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생물, 생화학, 원자력 등의 최첨단화된 뉴테러리즘의 수단에 대해서는 시급히 민영화된 경호경비 관련분야와 상호 연계하여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대테러활동에서도 민간부분시설, 다중시설 등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어떤 분야에서는 공공기관의 시설보다는 민영화된 시설분야가 더욱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되어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예로 2002한일월드컵 당시 일본은 대부분 경기장의 대테러대응에 민간안전분야의 역할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¹¹⁾ 아래 표와

9) 국정원, 「테러방지법 설명자료」(2003.12), pp. 3-4.

10) 체재병, “국가테러리즘과 군사적 대응”, 『국제정치논총』 제44집 2호(2004), pp. 57-61.

11) 이윤근, 「범죄예방을 위한 공경비 섹터의 민영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 국제학술세미나, 2003, p. 111.

같이 경기장의 시설물 출입관리, 수하물 및 반입 물품검사, 긴급 상황 대응, 차량검문 및 차량 유도, 기타 안전과 관계된 제반 안전분야활동 등을 책임지게 하였다.¹²⁾

<표 3>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회의 일본지역 경기장 민간안전분야활동 현황

(단위 : 명)

경기장	경비원수	정리원수	소 계	자원봉사자	합계
삿 포 르	870	251	1,121	696	1,817
미 야 기	851	175	1,026	474	1,500
이바라기	902	156	1,058	531	1,589
사이마타	1,031	191	1,222	834	2,056
요코하마	1,397	264	1,661	829	2,490
니 가 타	869	78	947	606	1,553
시즈오카	829	270	1,099	650	1,749
오 사 카	926	225	1,051	586	1,637
고 베	925	174	1,099	449	1,548
오 이 타	883	118	1,001	504	1,505
합 계	9,486	1,902	11,285	6,159	17,444

자료 : 일본전국경비협회, Security Times, 2002년 10월호, Vol. 274., p. 12.

선진국의 형태로 볼 때 일본 외에도 미국, 영국, 호주,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도 각각의 중요행사 및 회의, 국가주도의 행사에도 민영화 된 경호경비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민간안전분야에 대한 연구지원으로 LEAA(Law Enforcement Assistance Administration)가 「환경 설계에 의한 범죄예방대책(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을 국가차원에서 연구 및 지원을 하고 있어 학문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범죄예방의 실질적인 분야에 이르기까지 민간안전분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중요시설에서는 특수경비원 제도를 두어서 민영화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화, 복잡화, 과학화되어지고 있는 테러의 기법에서 대상, 범위, 수단, 주체 등의 여러 복합적인 요소에 대응하기에는 여러모로 볼 때 개선·보완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 대테러 대응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테러학의 학문적 영역이 구축되어 되려야 한다. 테러학의 내용 영역에서는 이론, 실습, 기타 관련학문영역으로 구분되어야 하고 전공영역에서는 인문사회, 사회과학, 자연과

12) 일본전국경비협회, Security Times, 2002년 10월호, Vol. 274, pp. 13~14.

학으로 나누어져야 하며 세부전공영역으로는 테러역사, 철학, 교육학, 행정학, 법학, 사회학, 심리학, 경영학, 역학, 측정, 자료분석, 생리의학, 등으로 세분화하며 학문적 이론영역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고 사료된다.

둘째는 대테러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전문가 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대테러 전문 관련 전공자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그에 따른 해결방법으로서는 테러관련 전공 분야와 경찰·경호·경비관련자를 중심으로 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대테러관련분야 및 경찰·경호·경비의 업무가 곧 테러의 대응전략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전문영역으로 전문가를 교육해야 할 것이다.

테러 전공자들의 주요 과목으로는 테러의 기원, 테러학개론, 국제테러조직론, 테러위해 분석론, 대테러전략전술론, 테러정보 분석론, 사이버테러론, 대테러장비 운용론, 대테러경호경비론, 대테러현장실무, 대테러정책론, 대테러 안전관리이론 및 실제, 대테러법, 생물·생화학테러, 대테러 경영론, 대테러 실무사례 세미나 등이 있다. 위와 같이 이런 교과목을 개설하여 대테러 전공자를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될 것이다.

따라서 테러학 전공과정을 대학에서나 경찰·경호관련 학과에서 세분화 된 테러학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그에 따른 대테러 전문과정과 전문대학원 과정을 신설하여 경찰·경호·경비 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상호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대테러 전문가를 육성해야 한다.

테러의 종류로는 육상 테러, 해상 테러, 공중 테러로 크게 나누지만 세분화하면 수단, 주체, 대상에 따라서 다양하게 테러가 일어나고 있다. 그에 따른 대테러의 전문 자격증 제도로는 등급별 차등을 두어 선진국에서 민간안전산업에서 전문 자격증이 있는 것과 같이 테러전문 자격증도 함께 통합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의 민간안전 분야 자격증인 경비지도사 자격증 종류도 다양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예로 각 시설별 민간경비 자격증, 교통, 방범, 컴퓨터, 호송경비, 검색 등으로 세분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¹³⁾ 이에 따라서 대테러 전문 자격증도 단계별로 1급, 2급, 3급 자격증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¹⁴⁾

13) 박준석, 『경호학의 학문적 정립을 위한 발전방안』, 제7회 한국경호경비학회 학술세미나, 2001, pp. 33-36.

14) 박준석·박대우, 『한국 민간경호경비 관련 자격제도 도입방안』, 제7회 한국경호경비학회 학술세미나, 2004, p. 202.

<표 4> 민간 시큐리티 산·학·관의 상호연계 방안



위와 같이 산·학·관이 연계된 민영화된 대테러 연구소가 필요하다. 미국의 국토안보국은 연방지원금 1,200만 달러를 투자하여 메릴랜드 대학, 남가주 대학, 미네소타 대학, 텍사스 A&M대 등의 4개 대학에 대테러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 대테러연구센터는 국제 테러의 근원적인 발생원인 규명, 테러리스트단체들의 내부조직 및 운영형태의 파악, 테러사 전차단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또한 국토안보국은 테러범들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정리한 국가기획시나리오를 작성하였는데 이 시나리오는 각종 테러가 실행될 경우에 대비하여 인명피해규모와 경제적 손실의 추정치를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다.¹⁵⁾

우리나라 또한 민간안전산업의 전반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테러의 일어나는 세분화된 대응전략에 대해서 방향과 개발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테러 매뉴얼화를 위한 국가기관의 연구소를 활성화하여 상호협조체제를 갖춘 대테

15) 장석현, 국가중요시설의 대테러방안에 관한 연구, 2005년 제7회 한국민간경비학회 정기학술세미나 논문집, 2005. pp. 8~9.

러 연구소가 필요하다. 국민들의 테러에 대한 이해,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 학계가 중심이 되어 지역, 직장, 가정에 이르기까지의 대테러 안전 대책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고 긴급대피 준비상황, 비상용품, 신고요령 등을 대규모의 국민적 홍보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번 부산 APEC 정상회담과 같이 일부에서는 민간 경호경비업체의 첨단 시스템장비 및 시스템을 활용하여 테러에 대응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산·학·관의 연계체제와 종합적인 사회안전 시스템의 발전은 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기관에서는 효율적으로 대테러 네트워크 구축과 안전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 수집, 정보 분석 측면에서도 공공기관의 주도적인 역할에서 민간 연구소에서 전문가 집단을 토대로 해서 과학적 검증에 의한 정보 분석 기법을 개발하여 테러리스트들의 동향, 조직, 형태, 자금의 이동 경로를 파악한다. 또한 테러리스트의 감시 시스템을 개발하여 국민들의 계몽과 홍보, 신고를 전략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테러 경보 체제를 전 국민들이 단계별로 구분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테러 경보 도입시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고조시키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환경적, 인적, 물적 요인에 대해서 여러 방법을 통한 즉 공청회, 전문가 면담 조사, 설문지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대테러 연구소에서 전략적인 매뉴얼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는 대테러 방지법 제정을 위한 민영화의 역할의 중요성이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테러 대응 업무는 15개 정부 부처가 각기 수행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기획, 조정 할 수 있는 위기관리 체제 구축 및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 즉, 주무부서의 명확한 역할이 중요하다. 각 부처의 대테러 업무를 책임질 상설기구가 없고 예방보다는 사후 처리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과 현재로서는 자금추적, 여행규제, 입국통제, 강제출국, 동향관찰, 감청 등의 활동이 국내법상 거의 불가능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 적으로 대테러 정책 강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법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는 정당하다고 본다. 선진국에서는 9.11 테러이후 테러방지 관련법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고 있다. 현재 우리도 여야 의원들이 국회에 발의하여 국회정보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좀 더 보강된 대테러 방지법의 제정이 필요하겠다.

V. 결 론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적 대응전략에서는 선진국과 같은 통합적인 대테러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둘째, 미국의 대통령 직속기구로 통합된 국토안보부와 같은 (가칭: 대테러 안전부)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대테러법에 대한 제정이다. 넷째, 국민과 상호신뢰 회

복할 수 있는 대테러 업무 민영화에 따른 협력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주무부서의 총괄화가 필요하다. 여섯째, 국민안전을 보장 할 수 있는 통합적 테러안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에 따른 민간안전분야의 상호연계성과 발전방안으로서는 첫째, 대테러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둘째, 대테러 전문가 자격증 제도를 도입시켜야 한다. 셋째, 민영화 된 대테러 연구소가 필요하다.

끝으로 우리나라 대통령훈령 제47호 ‘국가 대테러 활동지침’에 의하면 제 3장 테러사건 대응조직, 제4장 예방대비 대응활동, 제 5장 관계기관별 임무 등 활동지침에는 민간시큐리티와 연계분야 즉 다중이용시설과 국가 중요시설의 구체적인 대비, 대응, 복구 내용이 부족하다고 사료된다, 앞으로 18대 국회에서 대테러 법안이 꼭 통과되어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학계, 산업계가 함께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서 실질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민간안전분야의 상호연계성과 발전방안으로서는 첫째, 대테러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둘째, 대테러 전문가 자격증 제도를 도입시켜야 한다. 셋째, 민영화 된 대테러 연구소가 필요하다. 또한 민간 시큐리티와의 협력에서 민간안전 산업의 전문화, 세분화를 위해서라도 대학이나 민간안전관련 학회 및 협회에서 연구소를 설치해야 한다. 다양한 대테러 전문가를 양성하고 안전분야 관련 종사자들의 의식전환과 대테러 교육 기자재 및 교육내용을 구축해서 특정단체 권한이 아니고 인권침해 최소화 할 수 있는 다각적 검토 연구가 후속연구를 계속해서 연구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테러학의 학문적영역의 구축이 필요하다. 테러학의 학문적 범위 연구가 설정되어서 대테러전문가 양성이 체계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국가기관의 주도형으로 반전하기보다는 민간주도형으로 과감하게 학계와 적극적인 상호협력 방안에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 국제화 등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 후속적인 연구에서는 범죄와 전쟁과 테러의 상호관련에 관한 학문적 연구를 심층 깊은 분야별 연구가 되어 져야 한다.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안전분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따른 대테러의 대응책의 역할에서의 보안, 경호, 경비의 분야의 상호협력 방안도 요인별로 과학적 접근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국가정보원, 테러로부터 안전한 해외생활
국가정보원, “뉴테러리즘의 특징과 국제사회 대응동향,” 자료실-대테러상식-8번,
[http:// www.tiic.go.kr/참조](http://www.tiic.go.kr/참조)
- 강민완, 테러리즘의 효율적 대응에 대한 협력방안, 한국경찰학회보 제10권 2호, 2008.
- 박준석·박대우, 『한국 민간경호경비 관련 자격제도 도입방안』, 제7회 한국경호경비학회 학술
세미나, 2004, p. 202.
- 박준석, 『경호학의 학문적 정립을 위한 발전방안』, 제7회 한국경호경비학회 학술세미나,
2001, pp. 33-36.
- 세종 정책토론회 보고서, [테러와 한국의 국가안보]-테러발생시 파급영향과 우리의 대응방향
-, 세종연구소, 2004,
- 윤우주, “한국의 대테러 대비태세”, 『테러리즘과 문명공존』, 한국국방연구원 주최 학술외의,
2002, pp. 78 ~ 79.
- 이운근, 『범죄예방을 위한 공경비 섹터의 민영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 국제
학술세미나, 2003, p. 111.
- 이호섭, “한국의 대테러대책 연구 : 국가안보정책 차원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2002, pp.59~60.
- 일본전국경비협회, Security Times, 2002년 10월호, Vol. 274, pp. 13~14.
- 장석현, 국가중요시설의 대테러방안에 관한 연구, 2005년 제7회 한국민간경비학회 정기학술
세미나 논문집, 2005. pp. 8~9.
- Cindy C. Combs. Terrorism in the 21st Century(New Jersey : Prentice Hall,
Inc., 1997), p.220.
- U.S Department of State, National Strategy for Combating Terrorism
(Washington:Dos, September 2006), p19.
(http://www.rand.org/pubs/monograph_reports/MR989/MR989.chap3.pdf)

ABSTRACT

A Study Related on Relationship between New Terrorism's and Security Strategy for Korea

Kang Min Wan

Conclusion is like below.

First, as a private security area's mutual relationship and development device, it is necessary to bring up corresponding-terror expert.

Second, a privatized corresponding-terror research center is necessary.

Third, the importance of privatization's role for the corresponding-terror prevention law establishment.

It is considered that a diversified examination research that can minimize a violation of human rights by bringing up various corresponding-terror expert, paradigm shift of workers related security area, and construct corresponding-terror education equipment as well as education content, it is not a special group's authority, should be continued by a following research.

Academical area of terrorism's construction is necessary.

You need to approach by private initiatively boldly with the academic world as an active mutual cooperation politically, culturally, socially, internationally, etc, rather than developing national institute initiatively.

Also, in a following research, an academical research about a correlation of crime, war, terror should be done deeply, various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academic foundation of terror study

key Word : New Terrorism, Private Security, Counter-Terrorism, Strategy, Corresponding-Terror Expert